

건설업 인사노무 관리 실무 ④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국 시·도회를 순회하며 노무강습회를 실시했다. 본지는 회원사의 노무관련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회 노무강습회 교재로 사용된 '건설업 인사노무관리 실무'를 연재하고 있다. [편집자주]

- 본지 연재 계획 -

1. 2013년 달라지는 노동법 해설 ①②
2.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실무 ①②**
3. 4대 보험 정산 대응
4. 일용근로자 인사·노무관리 실무
5. 노동부 지원금 제도



일용근로자 4대보험 실무②

2.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후정산제도

가. 사후정산제도는?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급자·원도급자·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

나. 사후정산제 도입 배경

보험료가 낙찰율에 연동되어 건설업체들이 사회보험료 부족으로 보험가입을 회피함으로써 일용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지속되어,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 특히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련 단체에서 보험료 정산을 건의하였고, 정부에서 사회보장 확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함

※ 근로장려세제 도입으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부여되면서 건설현장의 사회보험료 확보방안이 근로장려세제 도입 기반을 조성하는 과제로 제기됨

다. 적용시기 법적 근거

- 국가계약법령 회계 예규 2006. 12. 29 개정으로 개정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
-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 입찰, 계약 및 최초 기성대가 지급 등 소요 기일을 감안
- 국가발주공사 2006.12.29, 지차체발주공사 2007.4.2, 민간공사 2008.1.1 이후 입찰부터 적용

라. 적용범위

적용대상자 : 직접 노무비 대상 일용근로자 (본사 및 간접 노무비는 제외)
 피보험자격 : 현장단위로 월 20일 이상 출역한 일용근로자

마. 보험료 산정 방법

EDI 방식에 의한 자격변동신고 및 납부고지시스템 운영 “현장별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바. 사후정산제도 절차

- ① 하도급 업체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확보를 위해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보험별로 실제 노무비 수준의 적정한 보험료를 계상하여 사후 정산토록 하는 약정을 맺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시 보험료가 산출내역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확인
 - ②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은 각 사업주단위로 현장별 1개월에 20일 이상 출역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 납부
-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는 사업주

50%, 근로자 50%의 금액을 원천공제 후 사업주가 신고 및 납부만 하면 됨

- ③ 보험료 납부확인서 첨부하여 최종 기성금 정산
- ④ 원수급인은 하도급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원도급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하여 발주자로부터 기성청구
- ⑤ 발주기관은 증빙 확인 후 원수급인에게 원·하도급보험료 포함하여 기성금 지급
- ⑥ 공사 종료 후 보험료 납부확인서에 근거하여 입찰공고 시 고지한 보험료 내에서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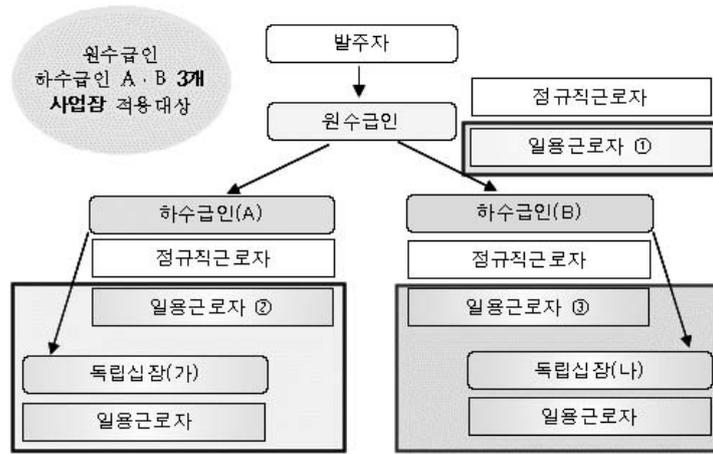
사. 사회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 고시 제 2011-271호)

-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 노무비 × 2.49%(1개월 이상 공사)
- 국민건강보험료 : 직접 노무비 × 1.70%(1개월 이상 공사)
- 산재보험료 : 노무비 × 3.7%
- 고용보험료 : 노무비 × 1등급:1.24, 2등급:0.92, 3등급:0.83, 4등급:0.81, 5등급:0.79
- 노무비율 : 원도급 28%, 하도급 : 32%

3. 일용근로자 건강보험·국민연금 적용기준

가. 사업장 적용기준 [취득·상실]

- 건설 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함
- ※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 (안전행정부 예규 제252호) 각 사업장별 현장 단위로 사업장 적용 건강, 국민연금의 피보험자 관리는 회사별로 신고하여야 함



사업장 적용 예시

- ▶ 원수급인, 하수급인(A), 하수급인(B) 3개 사업장을 각각 적용하되, 동 건설현장은 본사와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적용
- ▶ 정규직 근로자는 본사의 사업장에,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적용
 - 독립심장 (가), (나)와 소속 일용근로자는 하수급인 A, B 사업장의 가입자로 적용

나. 근로자 적용기준

- ①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 계약내용이 1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인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일수, 시간 불문함)
 - 자격변동 기준 (최초 고용일 취득일), (사용관계종료(퇴사)일의 다음날 상실일)
- ②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고용기간 1월미만인 경우 포함)
 - 근로자 인정요건 :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1일부터 말일까지 월력기준)

다. 자격변동일 기준

- ① 자격취득시기
 - 최초 근로일로부터 1월간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 최초근로일
 - 전월의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이던 근로자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 해당월의 1일
- ② 자격상실시기
 -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최종 근로일이 속한 날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 해당월의 1일
 - 다만, 해당월의 최종 근로일까지 연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로 상실 처리할 수 있음

라. 소득(보수)적용 기준

- ① 적용대상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변동된 소득을 적용, 보험료 산정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본사 사업장과

분리 적용, 보험료는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보수월액 변경 시에는 매월 신고(경정신고 5일 이내) 하여야 함

- ② 자격취득 및 가입 기간 중 보수월액 적용
 - 취득 월 또는 부과대상 월/사업장의 변

경신청에 의해 신고된 부과 대상 월의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결정

- 적용기간 : 취득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변경신청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건강보험 · 국민연금 적용기준(2013년 현재)

구분	적용대상	보험료 징수		
		보험요율	보험료 납부시기	보험료 납부절차
국민 연금	〈본사〉- 1인 이상 〈현장〉- 20일 이상/월	○ 지급임금총액 : 9% - 사용자 : 4.5% - 근로자 : 4.5%	○ 국민연금 : 자격취득한 달부터 상실일의 전날 이 속한달 까지	① 신고대상자 (취득 · 상실)신고 (EDI신고) ② 공단에서 정기고지서 발급 (18~22일) ③ 일괄경정고지(매월5일) ④ 수시경정신고(매월9일) ⑤ 최종경정고지서에 의한 보험료 납부(매월10일) ※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가상계좌납부 등
건강 보험	〈본사〉- 1인 이상 〈현장〉- 20일 이상/월	○ 지급임금총액 : 5.89% - 사용자 : 2.945% - 근로자 : 2.945% ○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사용자 : 6.55% - 근로자 : 6.55%	○ 건강보험 : 자격 취득한 다음 달부터(취득일이 1 일인 경우 취득 월부터) 상실일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① 해당연도의 임금총액을 추정,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 ② 개산 · 확정보험료를 정산하여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일시 또는 4회 분납 신청, 보험료 고지서에 의거 납부 ※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가상계좌납부 등
산재 보험	〈본사〉- 1인 이상 〈현장〉- 모든 공사	○ 노무비의 3.7%(사업주 부담) ○ 석면피해구제부담금 20인 이상 사업장 0.04%	○ 매보험연도 3,31일까지 (일시납부시 : 3%공제) - 분기별 4회 분납가능 ※ 연도 중 보험관계 소멸 시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① 해당연도의 임금총액을 추정,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 ② 개산 · 확정보험료를 정산하여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일시 또는 4회 분납 신청, 보험료 고지서에 의거 납부 ※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가상계좌납부 등
고용 보험	〈본사〉- 1인 이상 〈현장〉- 모든 공사	○ 고용안정사업 : 0.15% ○ 직업능력개발사업 - 상시 150인 미만 : 0.1% - 상시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 0.3% - 상시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0.5% - 1000인 이상 : 0.7% ○ 실업급여 : 1.1% => 1.3% (2013. 7월 시행예정) - 사용자 : 0.55% => 0.65% - 근로자 : 0.55% => 0.65%	○ 매보험연도 3,31일까지 (일시납부시 : 3%공제) - 분기별 4회 분납가능 ※ 연도 중 보험관계 소멸 시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① 해당연도의 임금총액을 추정,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 ② 개산 · 확정보험료를 정산하여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일시 또는 4회 분납 신청, 보험료 고지서에 의거 납부 ※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가상계좌납부 등
피보 험자 관리 (공통 사항)	가. 4대 사회보험에 대한 각종 신고 및 자격 · 보험료 조회 등의 업무는 인터넷 민원처리 가능 나. 인터넷 가능업무 ① 사업장의 신규가입 ② 내역변경(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③ 자동이체 및 탈퇴신고 ④ 근로자의 자격 취득, 상실신고			

